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30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

발 의 자 : 어기구 · 조인철 · 김병주
박용갑 · 박균택 · 임호선
김태선 · 이개호 · 권향엽
이상휘 · 김주영 · 손명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 완제품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에 따라 0%의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페로니오븀 ·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해서는 2~8%의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처럼 철강 완제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구조는 철강 부원료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철강 기업의 가격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철강 부원료에 대한 관세 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철강 산업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페로니오븀 · 페로티타늄 등 철강 부원료에 대한 기본세율을 무세(無稅)로 함으로써 국내 철강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별표 개정).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5류 번호란의 252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21	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1. 석회석	무세
		2. 기타	3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5류 번호란의 2529.21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529	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1. 가루	2
		2. 기타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5부제27류 번호란의 2704.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04	00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 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무세
		나. 기타	3

		2. 반성(半成) 코크스	3
		3.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3

별표 관세율표 제6부제38류 번호란의 3801.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801	3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무세
------	----	---	----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2류 번호란의 7202.21란, 7202.41란, 7202.49란, 7202.50란, 7202.60란, 7202.91란, 7202.93란 및 7202.99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무세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무세
7202	49	기타	무세
7202	50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무세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무세
7202	91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무세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무세
7202	99	기타	
		1.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3
		2. 기타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75류 번호란의 7502.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1. 음극	3
		2. 기타	무세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08.2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무세
		2. 가루	3

별표 관세율표 제15부제81류 번호란의 8111.0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무세
------	----	---	----

별표 관세율표 제16부제84류 번호란의 8455.3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8455	30	압연기용 롤	
		1. 조주제의 것	8
		2. 단조제의 것	무세
		3. 기타	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